

광주광역시서구행정구역(법정동) 경계변경 의견요청

1. 제안이유

- 상무3지구의 택지조성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병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법정동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 : 182필지 113,447㎡
- 마록동 162-11외 181필지 ⇒ 치평동
-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 : 마록동 162-11외 181필지는 서창동이었으나 상무1동으로 변경

3. 검토의견

이 개정 조례안은 상무3지구의 택지조성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병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법정동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.

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되, 다만 시·군·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(제4조 제1항), 지방자치단체를 폐치·분합하거나 구역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(제4조 제2항). 또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(제4조 제3항), 본 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

그런데 행정자치부령인 「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」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서(제11조) 본 건 의견요청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.

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로서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과는 다른 것입니다.

이러한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자연적·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,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확정해야 하고,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민주성의 요구를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.

그런데 이러한 행정구역은 산업화·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, 그리고 과거와는 변화된 구역획정기준에 맞추어 또한 그 개편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.

특히 근래에 계속적인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라 국토의 자연적·지리적 조건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였고, 교통통신의 발달 및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권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주민의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 등 여러 면에서 장애를 초래하므로, 행정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건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과 같이 행정구역을 적절히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